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2020. 7.

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
(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우정사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마련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밑에 두는 경영혁신기반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개편하고, 우편사업단장 밑에 두는 물류기술과를 폐지하고, 우정사업정보센터장 밑에 차세대금융정보과를 신설하면서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- 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경영총괄담당관·재정기획담당관·경영혁신기반담당관·홍보협력담당관”을 “경영총괄담당관·재정기획담당관·정보화담당관·홍보협력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영혁신기반담당관”을 “정보화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우편정책과·물류기획과·우편집배과·물류기술과·우편사업과·소포전자상거래과”를 “우편정책과·물류기획과·우편집배과·우편사업과·소포전자상거래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·조정
12. 우편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·관리(정보보호를 포함한다)
13. 우편전산장비의 보급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
14. 우정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사업의 총괄
15. 무인우체국 설치계획 수립 및 무인화에 관한 구축·운영
16. 우편물류분야 ICT 신기술 도입·운영
17. 우편물류 신사업 발굴 및 추진

제7조제7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

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10항)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

제11조제2항 중 “정보기반과·우편정보과·예금정보과 및 보험정보과”를 “정보기반과·우편정보과·예금정보과·보험정보과 및 차세대금융정보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차세대금융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통합 멤버십 시스템 운영 및 관리
2. 통합 캠페인 및 실시간 이벤트 마케팅 시스템 운영 및 관리
3. 우편 및 예금·보험 통합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
4. 옴니채널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
5.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운영 및 관리
6. 빅데이터 기반 전사 통합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
7. 우체국금융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및 운영 관리
8. AI, 블록체인 등 신기술 플랫폼 운영 및 관리
9. 공공데이터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관리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통합 업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차세대금융 시스템 구축

제15조제3항제3호 중 “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”을 “우편취급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17. 별정우체국의 운영·관리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경영기획실장) ① (생략)	제3조(경영기획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<u>경영총괄담당관·재정기획담당관·경영혁신기반담당관·홍보협력담당관</u> 및 <u>노사협력담당관</u> 을 두되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경영총괄담당관·재정기획담당관·정보화담당관·홍보협력담당관</u> -----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경영혁신기반담당관</u>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.	⑤ <u>정보화담당관</u> -----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⑥·⑦ (생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7조(우편사업단) ① (생략)	제7조(우편사업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우편사업단에 <u>우편정책과·물류기획과·우편집배과·물류기술과·우편사업과·소포전자상거래과</u> 및 <u>국제사업과</u> 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우편정책과·물류기획과·우편집배과·우편사업과·소포전자상거래과</u> ----
③ 삭제	
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한다)	
⑤ 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.	3. <u>우편전산장비의 보급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</u>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4. <u>우정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사업의 총괄</u>	
11. <u>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</u>	11. <u>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·조정</u>	5. <u>무인우체국 설치계획 수립 및 무인화에 관한 구축·운영</u>	
<신 설>	12. <u>우편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·관리(정보보호를 포함한다)</u>	6. <u>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물류 신기술 도입·운영</u>	
<신 설>	13. <u>우편전산장비의 보급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</u>	7. <u>삭 제</u>	
<신 설>	14. <u>우정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사업의 총괄</u>	8. <u>삭 제</u>	
<신 설>	15. <u>무인우체국 설치계획 수립 및 무인화에 관한 구축·운영</u>	9. <u>우편물류 신사업 발굴 및 추진</u>	
<신 설>	16. <u>우편물류분야 ICT 신기술 도입·운영</u>	⑧·⑨ (생 략)	⑦·⑧ (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)
<신 설>	17. <u>우편물류 신사업 발굴 및 추진</u>	⑩ 국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⑨ ----- 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⑦ <u>물류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	<삭 제>	<신 설>	16. <u>국제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</u>
1. <u>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·조정</u>		제11조(우정사업정보센터) ① (생 략)	제11조(우정사업정보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
2. <u>우편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·관리(정보보호를 포함</u>		② <u>우정사업정보센터(이하 “정보센터”라 한다)에 정보기반과·우편정보과·예금정보과 및 보험정보과를 두되, 각 과장은</u>	② ----- ----- <u>정보기반과·우편정보과·예금정보과·보험정보과 및 차세대금융정보과</u>
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보한다.	----- -----.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⑨ 차세대금융정보과는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
	1. 통합 멤버십 시스템 운영 및 관리
	2. 통합 캠페인 및 실시간 이벤 트 마케팅 시스템 운영 및 관 리
	3. 우편 및 예금·보험 통합고 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
	4. 옴니채널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
	5.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운영 및 관 리
	6. 빅데이터 기반 전사 통합분 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
	7. 우체국금융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및 운영 관리
	8. AI, 블록체인 등 신기술 플랫 폼 운영 및 관리
	9. 공공데이터 오픈 플랫폼 운 영 및 관리
	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통합

	업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전 산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차세대금융 시스템 구축
제15조(우정사업국에 두는 과) ① · ② (생략)	제15조(우정사업국에 두는 과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. 다만,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 청의 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 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운영·관리</u>	3. <u>우편취급국</u> ----- -----
4. ~ 18. (생략)	4. ~ 18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사업지원국에 두는 과) ① · ② (생략)	제16조(사업지원국에 두는 과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.	③ ----- --.
1. ~ 16. (생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7. <u>별정우체국의 운영·관리</u>
17. (생략)	18. (현행 제17호와 같음)